

의안번호	2200179
의 퇴 인	김정호의원
회 답 일	2024. 07. 08.
추계번호	24D0539

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지원단을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,900만원, 2029년 1,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9,500만원(연평균 1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협의회 설치(안 제5조)	14	14	14	14	14	70	14
협의지원단(안 제7조)	5	5	5	5	5	25	5
합 계	19	19	19	19	19	95	19

주: 1.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일부를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2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협의회 및 협의지원단 구성 및 운영은 유사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참고하여 협의회 민간위원을 14명, 협의지원단 민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 개최, 회의참석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2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)·제6호(협의회의 회의)	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(半期)에 1회 개최하고,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7조(협의지원단)	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지원단을 둔	의무규정
3	안 제8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)	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·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2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설립 등)	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4조(경비의 부담)	국가나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5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·운용)	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	의무규정
7	안 제23조(국가의 재정지원)	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이전에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	의무규정
8	안 제24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설치 등)	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	의무규정
9	안 부칙 제2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위원회의 설치)	행정안전부장관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)·제6호(협의회의 회의)	○	유사사례(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 등)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7조(협의지원단)	○	
3	안 제8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)	X	행정상·재정상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,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안 제12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설립 등)	X	지방공기업의 설치 여부, 해당 공기업의 규모와 사업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5	안 제14조(경비의 부담)	X	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,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6	안 제15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·운영)	X	특별회계의 설치 여부, 규모 등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7	안 제23조(국가의 재정지원)	X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국가가 기존 지원 대비 증액하여 지원할 가능성, 증액 규모 등을
8	안 제24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설치 등)	X	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9	안 부칙 제2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위원회의 설치)	-	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하여 준비위원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및 협의지원단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협의지원단은 협의회 회의 개최시 안건 선정 등의 사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의로 가정하여 추계

- 본 추계에서는 지원협의회 및 협의지원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한정
 - 회의 운영을 위한 인쇄비 등은 담당 부서 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및 협의지원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
가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(안 제5조)

- 본 추계에서는 협의회를 총 28명(민간위원 14명)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, 연 4회(정기회 2회, 임시회 2회)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수를 참고하여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50%인 14명을 민간위원으로 가정
 -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2회(반기마다 개최), 임시회 2회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25만원으로 하고,¹⁾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1)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

□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 □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- 추계결과,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400만원으로 추계됨
 - 협의회 민간위원 14명에게 25만원씩 4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므로 연간 1,400만원(=14명×25만원×4회)

[표 2] 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설치(안 제5조)	14	14	14	14	14	70	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협의지원단(안 제7조)

- 본 추계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협의지원단을 총 20명(민간위원 5명)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, 연 4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
 -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참고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 가정
 - 협의지원단은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안건 선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므로 협의회와 동일하게 연 4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
 -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25만원으로 하고²⁾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협의지원단을 두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500만원으로 추계됨
 - 협의지원단 민간위원 5명에게 25만원씩 4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므로 연간 500만원(=5명×25만원×4회)

2)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

□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 □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3] 협의지원단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협의지원단(안 제7조)	5	5	5	5	5	25	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협의회의 민간위원 수 및 개최 횟수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